西紀 2023년 2월 23일 制定施行

차 량 관 리 규 정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

목 차

- 제1조 - 목 적
- 제2조 - 적용범위
- 제3조 - 용어정의
- 제4조 - 규정준수 의무
- 제5조 - 차량운행 자격제한
- 제6조 - 차량운행
- 제7조 - 책임과 권한
- 제8조 - 차량세금 및 보험
- 제9조 - 차량배차
- 제10조 - 연료공급
- 제11조 - 차량정비
- 제12조 - 차량 세차관리
- 제13조 - 차량매각 및 교체
- 제14조 - 사고처리

제1조 [목 적]

이 규정은 조합 차량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행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조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적용한다.

제3조 [용어정의]

1. "차량관리주관부서" 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.
2. "차량관리주관부서장" 이라 함은 차량관리주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.
3. "차량관리담당자" 라 함은 차량관리를 직접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.
4. "차량사용자" 라 함은 차량배차로 인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 [규정준수 의무]

조합 직원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제5조 [차량운행 자격제한]

조합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량운행 자격을 제한한다.

1.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.
2. 기타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 제한하는 자.

제6조 [차량운행]

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기본점검을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항상 안전운전을 하며,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.

1.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,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.

2. 기본점검이란 타이어, 주유상태 등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.
3. 차량의 이상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차량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.
4. 차량사용자는 운행 시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기록한다. 단, 이사장 전용차량은 제외한다.
5. 주말이나 휴일에 필요에 따라 조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.
6. 이사장 전용차량은 택시반납 등 사유로 인해 지원하는 이사장 전용차량의 업무특성상 휴일 및 일과 후에도 이사장 편의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.
7. 기타 차량운행은 차량관리주관부서장 주관 하에 운행한다.

제7조 [책임과 권한]

1.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.
   1)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수급, 교체, 정비 및 운행 등에 필요한 제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한다.
   2) 차량관리 실무수행을 위하여 차량관리 주관부서에서 차량관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2. 차량관리담당자는 총무과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부서원으로 한다.
   1)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을 보좌하여 차량의 정기검사, 정비, 배차 및 행정 처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한다.
   2) 차량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정비와 가동상태를 항시 점검 및 감독한다.

3. 차량사용자
   1) 차량배차로 인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.
   2) 차량사용자는 조합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8조 [차량세금 및 보험]

조합명의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금은 조합에서 전액 부담한다. 조합명의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조합에서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,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 [차량배차]

1. 차량배차는 제5조의 차량운행 자격 해당자에 한하여 허용된다.
2. 차량배차 이후 다음 각 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.
   1) 차체의 이상유무
   2) 차량의 공구일체 등 특이사항

제10조 [연료공급]

1. 차량의 연료공급 후 주유 영수증 등은 경리과에 제출한다.
2. 조합차량 부재 시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아래에 기준하여 유류비를 지급한다. [별표 1]
   1) 유류비 지급방법 : *평균연비(5)
      [주행거리(km)÷연비] × 연료평균단가 = 원단위절삭

제11조 [차량정비]

1. 차량의 정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정비공장 및 센터에서 수리한다.
2. 차량에 필요한 부품 및 용품은 구매절차에 따라 차량관리담당자가 구입하여 보급한다.
3. 조합명의의 차량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비는 조합에서 전액 부담한다.

제12조 [차량 세차관리]

1. 조합 차량의 세차는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차량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 [차량매각 및 교체]

1. 차량의 매각 및 교체는 다음 각 호 기준을 만족할 시 가능하다.
   1) 사고 또는 노후화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2) 단일정비 및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(중고차시세)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   3)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 [사고처리]

1.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및 견인료 등은 조합과 차량사용자가 2분의 1 부담으로 하고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득력을 지니면 조합이 전액 부담을 한다.
2. 교통벌과금 고지사항 발생 시 차량사용자에 통보하여 부담 조치한다.
3. 벌과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4. 차량사용자는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조합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

이 규정은 승인을 얻는 즉시 시행하며, 부칙에 명시한다.

1.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2. 차량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[별표 1]

유류비 신청서

신청자	부 서		직 위	
	성 명	(서명 인)		
일 시				
외 근 사 유				
출 발 목적지				
유류비 지급계산	※[주행거리(km)÷연비(평균5)]×연료평균단가=원단위절삭			
특이사항				

결 재	담 당	경리계장	총무과장	부 장	전무이사	이 사 장